

프랑스 경쟁정책의 기본적 특징

머리말

자유경제하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금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 정책노선의 의의를 이해하고 지지해 온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을 대규모화 하고, 또한 경쟁을 배제하고 관·민협조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전후 프랑스는 후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전개했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경쟁법 형성의 과정을 검토하고 프랑스 경쟁정책의 기본적 특징을 살펴 보는 것도 적지않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후 프랑스 정책노선의 특징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서의 정책노선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에 의한 합병의 추진과 산업의 보호 육성을 지향하면서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관·민 협조체제」의 형성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전후 경제를 부흥·발전시키고 또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노선으로서 대략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전후 프랑스(및 영국)가 선택했던 노선으로 정부가 산업을 보호·육성함에 따라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제운영을 시장기구·경쟁원리에 맡기는 노선으로, 전후 서독이 채용했던 정책노선이다. 「프랑스형 정책노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대비하여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형 노선의 기본 인식은 「기업의 대규모화가 국제경쟁력 강화로 통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후 프랑스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형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철강, 화학, 자동차, 석유, 항공기, 금융 등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 제5차 경제 계획(1966~1970년)에는 주요산업을 크게 집약화해야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 주요산업의 많은 부분이 국유화된 사실이다. 여기에서 인식의 기본은 사기업보다도 국영기업쪽이 능률이 뛰어나고 또한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또한 1947년 이후 경제계획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이다. 예를 들면 1980년 전후에 미국은 레이건 정권, 영국에서는 대처정권이 들어서고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세계화 추세」로서 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이 취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프랑

스는 미테랑 사회당 정권하에서 국유화를 추진했다. 다른 선진국들이 시장기구와 경쟁원리 중시의 노선을 취한 반면 프랑스만이 「대규모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만이 국제 경쟁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쟁촉진·독점금지 정책이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던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그 후에 경제부진과 「기대에 못미치는」 국제경쟁력 강화, 더욱이 EU 주도국으로서 자국의 경쟁정책을 EU경쟁정책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정 등에 의해 이제까지의 방향과 반대로 민영화와 경쟁노선으로 전환했다. 특히, 1986년의 「新경쟁법」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프랑스와는 반대로 서독은 전후 나치스 시대의 독재정치와 통제경제, 그리고 독점체제에 의한 자유압살의 경험을 반성하고 여기에서 권력분산에 의한 개인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인격 존중이라는 자유사회의 근본이념을 강하게 자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경쟁법이 제정되었고 「경제헌법」으로 불리워진 연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발터·오이켄을 總師로 하는 프라이블구 학파의 경제정책 원리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즉, ① 개인의 자유 내지 개인의 인격 존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② 이것을 달성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경쟁촉진·독점금지 정책(경쟁정책)과 통화 가치 안정정책의 두 가지를 특히 중시하였다. 경쟁정책이 중시되는 이유는 「경쟁질서」만이 뛰어난 경제성과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두 가지 정책노선의 경제적 성과에 관해서는 서독형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특히 1986년 이후의 노선전환도 이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프랑스 경쟁정책의 역사와 내용 및 특징을 간단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프랑스 경쟁법의 형성과 특징

전후 프랑스의 경쟁법은 1953년 「가격령」을 개정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부분 개정이 반복되고 1977년의 「경제집중 규제, 위법 카르텔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 처벌에 관한 법률」과 1986년의 「가격 자유 및 경쟁에 관한 법령」의 제정을 거쳐 오늘날의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1) 경쟁법의 제정과 개정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각국에 경쟁법을 제정하도록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에서의 경쟁법 제정도 영국이나 서독 그리고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에 의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산업은 중소기업이 지배적이고 국제경쟁력도 강력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부통제와 산업보호·육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경쟁법 정비의 움직임은 매우 완만했다.

전후 프랑스에서는 1945년 6월에 「가격령」이 제정됨으로써 판매거부와 끼워팔기가 위법화 되었다. 이들 위법행위는 확실히 경쟁법상 문제가 될만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정부통제, 특히 가격통제의 수단이 된 점에서 특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점행위」가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경쟁정책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 독점행위를 배제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저하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가격령」은 정부가 가격과 마진을 고정 내지 통제해서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프랑스에 있어서는 고집중산업과 카르텔화한 산업에 대하여 한층 강력한 가격통제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도 당시 경쟁원리보다는 정부통제가 높이 평가되어 있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일반적 특징은 경쟁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존속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법 제정에 관해 보면 프랑스 최초의 경쟁법은 1953년 「가격령」 개정이라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가격령」에 「갖가지 공동행위, 협약, 명시 또는 묵시의 협정, 또는 각종 형태의 연합」을 규제하는 「카르텔 금지조항」을 부가하여 「경쟁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시행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카르텔 및 지배적 지위에 관한 전문 위원회」(카르텔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 같이 경쟁법이 일단 제정되기는 했지만 경쟁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지지는 여전히 낮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프레드릭 · 제니에 의하면 당시의 일반적 인식은 「경쟁은 반드시 효율향상과 생산증대를 가져오는 최적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경쟁을 중시하는 것이 기업의 리더와 프랑스 정부가 지지하는 산업정책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경쟁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고 기껏해야 산업정책의 보조적 역할을 할 정도의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쟁법은 그 후 점진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즉, 1963년에는 「가격령」이 다시 개정되어 「지배적 기업에 의한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리하여 경쟁법은 종래의 카르텔규제에 더하여 독점적 · 시장지배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67년에도 카르텔 금지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들 개정의 기본방향은 손대지 않고 일부 보완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산업의 보호 · 육성 등 전통적 정책노선은 「1977년법」이 제정될 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 「1977년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1977년법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당시의 벨수상이 이 법률 제정에 크게 공헌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래 그는 경제학자로서 근대 경제학의 가격이론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수상취임 이전에 EEC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일이 있고 유럽에서의 기업간 경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어 자유주의 경제에서의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경쟁법 성립의 배후에 이같은 벨 수상의 리더쉽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걸쳐서 미국에서의 하버드 학과의 「산업조직론」 연구가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그 결과 독점적 거대기업의 효율이 반드시 양호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독점·과점의 폐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론은 프랑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EEC의 리더국임을 자처하고 있던 프랑스가 EEC경쟁정책과 조화되지 않는 정책노선을 계속 취할 수는 없다는 사정도 크게 작용했고 EEC위원회가 1972년 이래 합병·취득을 규제하려고 기획한 것에 대해 프랑스 측이 이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도입을 피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리고 1973년 이후 오일 쇼크에 의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즈음부터 이에 대한 유효한 대책으로서 경쟁정책으로의 기대가 높아졌다는 사정도 잊어서는 안 된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1977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종래의 「카르텔 위원회」를 대신하여 경제장관으로부터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경쟁위원회」의 설치
- ② 카르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과징금」제도의 신설
- ③ 합병 등의 경제 집중에 대한 규제

이처럼 이 법률은 독립 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명하는 등 경쟁법으로서 평가될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종전 법체계에 있어서도 카르텔과 지배적지위의 남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반행위에 이렇다 할 처벌도 없고 억제효과도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실효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경쟁위원회에 없고 경제담당 각료의 수중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전문가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가령 경쟁위원회가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명하도록 제안했다고 해도 경제담당 장관이 「정치적 배려」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관대하게」 다스리게 다루는 경우가 있어 과징금 제도는 사실상 「허울뿐인」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나중에 이같은 상황의 반성으로 1986년법 제정의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다.

1977년법의 또하나의 특징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합병규제 조항이 도입된 점이다. 여기서는 합병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① 수평합병은 40%, ② 수직합병은 25%를 넘을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단, 「경쟁의 저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진보에 대한 유효한 기여를 가져오는 합병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더구나 경제담당 각료는 경쟁위원회에 합병의 여부를 회부하기는 하지만, 그 답신내용과는 관계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합병규제 조항이 도입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과징금 케이스와 같이 현실적으로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1977년법의 제정은 프랑스 경쟁법의 내용을 상당히 정비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전통적인 정부통제의 지지가 여전히

강하고, 또한 경쟁원리와 시장기구의 불신감과 불안도 뿌리깊게 잔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경쟁법을 발전시키면서도 정부통제와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이 병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게다가 1981년에는 미테랑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세계의 추세에 반해 다시 국유화가 진행되기조차 했다. 이같은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86년법의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3) 「1986년법」의 제정

1. 제정의 배경

앞에서 보았듯이 1977년법은 경쟁법으로서 상당히 정비된 내용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금지하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은 1980년 전후에 영국에서는 대처 정권,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권, 서독에서는 콜 정권이라는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각각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시장기구 존중의 정책노선을 취한 것에 반해, 프랑스는 사회당 정권에 의한 국유화노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국영기업과 정책적으로 추진한 합병기업은 매우 비효율적임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제2차 미테랑 정권하에서는 이미 「국유화추진」의 노선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전후 자유시장경제·경쟁질서를 지향해 온 서독 등에 대해서 프랑스 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부족도 분명했다. 이리하여 프랑스도 서서히 전통적인 「정부개입주의」에서 시장기구와 경쟁원리를 존중하는 정책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앞서의 1977년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활발한 경쟁에 의해 경제·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가격통제를 철폐하고 동시에 경쟁정책을 한층 엄격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86년법은 이같은 현실적 요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유형

가. 카르텔

- ① 공동행위, 협약, 명시 또는 묵시의 협정 등이며, 경쟁기능을 방해, 제한하거나 왜곡할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은 금지된다(가격령 제50조 제1항).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규제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 그리고 특히 생산성 향상에 의해 경제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당사자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가 된다(동 제51조).

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기업의 활동이며 시장의 정당한 기능을 저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

거나 이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은 금지된다(동 제50조 제5항).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규제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 그리고 특히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 경제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당사자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가 된다(동 제51조).

다. 경제집중(기업결합)

- ① 유효한 경쟁을 저지하기에 이르는 법률상의 모든 행위나 활동은 규제할 수가 있다. 이 규제권 한은 1985년말까지는 집중된 국내시장에서의 관계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다음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1977년 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a. 종류를 같이 하는 대체관계에 있는 재(財), 제품(製品) 또는 용역에 관한 집중에 있어서는 국내소비의 40%
 - b. 종류를 달리하는 대체관계가 없는 재(財), 제품(製品) 또는 용역에 관한 집중에 있어서는 국내소비의 25%그러나 전술한 경쟁개선법에 의해 상기 구별이 폐지되었으며 시장점유율 25% 이상이 되는 경제집중은 모두 규제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종래 수평적 합병의 규제기준이 40%였으므로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식기준에 관한 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거의 동등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합병규제기준완화 움직임에 비추어 보면 합병규제에 관한 선진공업국의 고찰이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② 경쟁저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진보에 대한 유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전기(前記)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기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을 고려하여야 한다(동 제4조 제4항).

라. 불공정한 거래방법(개별적 제한관행)

판매거부, 재판매가격유지, 가격차별 등의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부당염매(이들 행위는 개별적 제한관행이라 한다)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가격령 제37조, 동 3조의2 및 부당염매, 기만적광고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서적뿐이다(가격령 제37조 제1항 제d호).

그리고 이들 행위가 경쟁기능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동행위 등이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으로서 금지된다(가격령 제50조 제1항 및 제5항).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제담당장관은 경쟁위원회의 답신에 의해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규제조치법령(가격령 제54조 제1항)경쟁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나 제51조 제2항에 규정된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징금

위반자가 기업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부문의 연간 세이전 총거래가액의 5%, 위반자가 아닌 기업의 경우는 500만 프랑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징금액은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액, 경제에 미친 손해정도, 금융상황 및 관계기업 또는 관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동 제53조 제2항 및 제3항).

③ 형사벌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4개월 이상 4년 이하의 금고 또는 120프랑 이상 40만 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경제법령위반행위처벌절차령 제41조)의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경제집중(기업결합)

제집중은 임의로 경제담당장관에게 신고할 수가 있으며 장관은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쟁위원회에 안건을 부탁할 수가 없고, 또한 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동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위원회 및 경제담당장관은 각각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으며, 경제담당장관은 경쟁위원회에 부탁할 수가 있다(동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경쟁위원회는 부탁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심리하고 경제담당장관에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한 견해를 답신한다.

경제담당장관이나 소관장관은 경쟁위원회의 신고에 의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안의 불시행명령, 원상회복명령, 계획안의 변경, 보완명령, 유효경쟁을 확보 또는 회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나 제51조 제2항에 규정된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977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4. 불공정한 거래방법

경제담당장관은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관에게 송부하면서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프랑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와 같은 형사벌을 부과할 수가 있다(경제법령위반행위처벌절차 제40조).

5. 손해배상

이상의 규제조치 외에 가격령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 및 일정의 소비자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르와이에법 제45조 및 제46조).

합병규제에 관해서는 경제담당 각료가 여전히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977년법과 다르지 않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합병에 의한 대규모화」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이 있다. 사실 산업정책 담당자 사이에서는 지금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집중이 불가피하다」라는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규제의 규정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정책시행이 경제진보와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도 뿌리깊었다. 그러나 이 합병규제 도 근년에 와서는 건수가 증가해지면서 서서히 엄격해져가는 경향에 있다.

86년 경쟁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경제 종속 상태의 남용의 금지(제8조)와 구입가격을 밀도는 가격으로의 재판매가격금지(제32조)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 종속 상태의 남용의 금지란 동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객 또는 공급업자인 기업의 자기에 대한 경제적 종속상태의 남용(특히 판매 거절, 구속조건 또는 차별적 판매 조건을 붙인 판매 및 상대방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거래관계 중지를 포함한다)을 금지하고 있다.

이의 예로서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여 부당하게 싼 가격을 책정한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4) 96년 7월 경쟁법의 개정

96년 7월에, 86년 경쟁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저가판매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한 「거래관계의 공정 및 균형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96년 경쟁법의 개정취지로는 첫째, 기업간의 상거래는 공정한 경쟁 및 균형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행해져야만 하고,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에 균형을 이룬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둘째, 경쟁은 가격인하, 질 및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옴과 함께 소비자의 이익향상 및 고용발전에도 이바지하지만 동시에 「약탈적인」 행위를 하는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중립적인 룰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31조와 제32조, 그리고 제28조를 들 수 있는데 제31조는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2조는 3개항, 제28조는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31조

제31조는 명세서에 관한 규정으로 「명세서에는 ...명세서에 있어서 예기되지 않았던 어음할인을 제외하고, 해당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원인 관계를 갖는 할인이 모두 명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었다. 이것은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제공업자와 유통업자가 다시 가격에 관한 상담을 개시함으로써 유통업자가 제공업자에게 또다시 할인·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당염가판매의 기준이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할인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함으로써 기준이 되는 가격의 하한선을 명확히 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있다.

2. 제32조

이것은 현상대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의 부당 염가 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실제 구입가격은 구입 명세서에 기재된액에 대상세, 해당 재판매에 관련된 종량세 및 필요할 때는 운송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정된다」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96년 경쟁법에서는 이 금액을 실제의 구입가격으로 규정하고, 또 벌금액도 50만 프랑으로 인상되게 되었다.

어떤 상업관계자도 상품을 현상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실제의 구입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재판매 하고, 또는 재판매할 뜻을 고지한 경우에는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광고 매체라도 그것이 실제의 구입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인용하여 행해지고 있을 경우에는 광고에 관한 비용의 절반에 상당 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제1항 제1호).

3. 신 제10-1조

이 조항은 약탈적 가격에 관한 규정이고 금번의 개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제32조가 상품을 현상대로 판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해당 규정은 생산, 가공, 선전활동이란 부가가치를 상품에 덧붙여 판매할 경우, 즉 판매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 CD와 레코드라는 녹음물에 관해서도 이것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약탈적 가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제28조

금번 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신선식품에 관해서 광고등에 의해 할인을 고시할 경우에 관해서 상품의 상미 기간등의 표시의 의무화와 동시에 관련 판매 촉진 활동이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전후 프랑스에서는 서독과는 대조적으로 산업정책과 가격통제등 「정부개입주의」에 대한 일반적 지지가 강한 반면, 경쟁법의 정비는 지지부진하였다. 하지만 1986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장기구와 경쟁원리에 대한 지지가 증대되고 경쟁정책노선으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레드릭·제니는 이 현상에 관해 「이제 곧 경쟁과 경제적 자유가 유익하다는 것에 정치적 합의를 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 이 추세가 퇴보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이 맞다면 프랑스 경쟁정책은 오늘날 조금 늦으나마 본격적인 전개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